심의·의결 제도 및 주요 해석 사례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 현 경

목차

1. 개인정보 심의·의결 제도

- 보호위원회/소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 심의·의결 신청 반려 사항
- 심의·의결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2. 주요 해석 사례

- '개인정보' 해당 여부
-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 개인정보의 열람

1. 개인정보 심의·의결 제도

보호위원회/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9명의 위원으로 구성</u>한다.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 ·의결 사항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운용**에 관한 사항
- 6.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법 제7조의9 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4.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신청 반려 사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결정 등)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 9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 <u>2. **수사** 중인 경우</u>
- 3.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대상 여부는 소위원회가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심의·의결 신청을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의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개인정보처리자 등

- 민간 법인·단체, 개인 포함 (단, 법 제18조 제2항 제5~9호 제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모두 가능

효력?

유권해석

- **처분X**, 판결X
-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으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재신청 가능

적용 범위?

해당 사안의 당사자로서, 의결서에 명시된 자

-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동일한 경우** 준용 가능 (단,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의결한 경우 제외)

<u>2. 주요 해석 사례</u>

'개인정보' 해당 여부 (1)

법 제2조 (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019. 5. 27.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

주문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정보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태아에 대해서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살아 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판단

한편,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임산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정보' 해당 여부 (2)

판단 기준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이를 통한 **개인식별가능성** 등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수집한 차량번호판 정보
- 지자체/공사·공단(**공영주차장**)에 등록된 차량번호
- 경찰청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처리(경찰청 자체 시스템에 저장, 필요시 검색 및 출력)하는 차적자료
-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통해 수집 · 보유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 · 보험급여 신청자 및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법인 소유 자동차만 가입 가능한 4개 공제조합(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에 가입된 자동차'및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법인 소유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손사고 이력 정보는 법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2017. 10. 16. 제2017-20-168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조 (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018. 10. 1.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 파다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 **도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영상정보의 열람, 분석 및 저장 등 개인정보의 처리는 시·군과 OO지방경찰청에서 하고, **도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음. 또한, 영상정보의 제공은 OO지방경찰청의 요청 및 112신고 처리종료에 따라 제어되고 **도가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으며, **도의 통합플랫폼은 시•군이 OO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 함
 - **도의 행위는 시·군이 처리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도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 따라서 본 건은 시·군이 **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제2조 (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021. 5. 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 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주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단순히 가정 내 아이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정의 안녕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활동**에 해당할 뿐, 이용자가 아이의 보호자로서 보호의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법 제17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제공)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023, 4, 26,

△△△주식회사의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주문 △△△주식회사는 김포공항역·고촌역·풍무역의 승강장 등에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4항에 따라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식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열람

법 제35조 (개인정보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열람)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019. 7. 22.

◇◇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주문 ◇◇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개인영상정보에서 보호조치된 제3자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판단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상 청구 목적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당해 열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